
2017학년도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 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 공지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 4.

금오공과대학교 입학관리본부

【 차 례 】

I.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 대비표	1
II. 전형일정	1
I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IV. 지원자격	2
V. 제출서류	4
VI.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배점	6

I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주요변경사항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비 고
전형 신설	• 없음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편입학(IT융합학과)	정원 외
공인영어 성적 인정기간	• 2014년 2월 이후 취득한 공인영어성적만 인정	• 2015년 2월 이후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만 인정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2년) 경과에 따른 변경

II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16년 12월	편입학 모집 요강 홈페이지 공고
원서접수	2016년 12월	인터넷 접수
관련 서류 제출	2017년 1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전공면접고사	2017년 1월	우리대학 지정 고사실, 전공에 대한 구술면접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등록	2017년 2월	홈페이지 발표 및 지정 금융기관

※ 세부 일정은 교육부 『2017학년도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11월)』에 따라 확정함

I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일반편입학

- 가. 2016년 모집단위별 1, 2학년 제적자 수 등에 의거 산정한 인원(12월 초 공고 예정)
- 나. 1, 2학년 제적자가 없는 학부(과)는 모집하지 않음(추후 공고)

2. 학사편입학

- 가. 2015학년도 전체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까지 선발
- 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선발 가능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확정함

3.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 가. 본교와 전문대학 간 체결한 연계교육과정 협약에 따른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
- 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본교와 전문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해지 여부 또는 기타 여건에 따라 조정 또는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4.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편입학

- 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1, 2학년 학생 중 직전 학년도에 제적된 인원
- 나. IT융합학과만 모집

IV 지원자격

1. 일반편입학

다음의 가 ~ 다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전적(출신)대학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다음 1) ~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전문대학(2년제, 3년제)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3년제 대학(학과)에서 2년을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2) 4년제 정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각종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자
 - ※ 2017년 2월말 이전 수료예정자를 포함하며, 반드시 출신대학 학칙상 2학년 이상 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지원하여야 함
 -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45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
 - 4) 기능대학 졸업(예정)자
 - 5)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과정의 8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나. 2015년 2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16년 12월말 예정)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
 - 1) 인정하는 공인영어 : TOEIC, TOFLE, TOFLE(IBT), TEPS
 - 2) TOEIC Bridg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기관TOEIC(TOEFL)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 국내 TOEIC 및 TEPS 시험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다. 전적대학의 전공(학과)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라. 지원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1) 원서 접수일 현재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원서접수일 현재 제적생 및 졸업예정자 제외)
 - 2) 모집유형간 복수지원 불가
 - 3) 동일 전형 내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 불가

2. 학사편입학

다음의 가 ~ 다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한 경우에는 2017년 2월말 이전에 학사학위 취득자에 한함

나. 2015년 2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16년 12월 말 예정)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

1) 인정하는 공인영어 : TOEIC, TOEFL, TOEFL(IBT), TEPS

2) TOEIC Bridg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기관TOEIC(TOEFL)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TOEIC 및 TEPS 시험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다. 전적대학의 전공(학과)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라. 지원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 모집유형간 복수지원 불가

2) 동일 전형 내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 불가

3.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다음의 가 ~ 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9호에 의거, 본교와 사전 연계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에서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

나. 본교 교육과정 연계학부(과) 부서장의 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을 받은 자

다. 지원제한

1) 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일 전에 입학 또는 졸업한 학생은 지원 불가

2) 연계교육과정 협약 상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자는 지원 불가

4.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편입학

다음의 가 ~ 마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14호 다목에 의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며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2017. 3. 1. 기준)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정한 특성화(종합고의 특성화 학과 포함)고등학교 졸업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정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

4) 「평생교육법」에 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산업체 범위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3)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산업체(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 보험 미 가입 영세창업자·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인정할 수 있음

다. 재직 기간 산정

- 1)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 2) 근무(영업)기간 산정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날부터 근무(영업)한 것으로 간주
 -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 3)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민법」제160조 참조)
 - 예)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라. 학생자격 유지기준 :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

마. 전적(출신)대학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다음 1) ~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전문대학(2년제, 3년제)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3년제 대학(학과)에서 2년을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2) 4년제 정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각종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자
 - ※ 2017년 2월말 이전 수료예정자를 포함하며, 반드시 출신대학 학칙상 2학년 이상 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지원하여야 함
-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과 2012학년도 1학기 이후 신입생으로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 이상 수료(예정)자
- 4) 기능대학 졸업(예정)자
- 5)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과정의 8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바. 지원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1) 원서 접수일 현재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원서접수일 현재 제적생 및 졸업예정자 제외)
- 2) 모집유형간 복수지원 불가(IT융합학과 외 지원불가)

V 제출서류

1. 일반편입학

가. 편입학 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원서)

나. 학력증명서 1부(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 제출)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2) 4년제 대학 출신자 :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1부
 - 3) 학점은행제 등 : 학점인정증명서(학사학위과정자) 또는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다. 전적(출신)대학 전 학년 또는 최종학력 성적증명서(총 취득학점 및 총 취득학점의 백분율점수가 기재된 것) 1부
- 라. 본교 출신자 : 제적증명서 1부
- 마. 공인영어 성적표 사본 1부

2. 학사편입학

- 가. 편입학 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원서)
- 나. 학력증명서 1부(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 제출)
 - 1)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2) 학점은행제 등 :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다. 전적(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총 취득학점 및 총 취득학점의 백분율점수가 기재된 것) 1부
- 라. 공인영어 성적표 사본 1부

3.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 가. 편입학 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원서)
- 나.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다. 전적(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총 취득학점 및 총 취득학점의 백분율점수가 기재된 것) 1부
- 라. 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 1부

4.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편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공통) 	가. 편입학 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 사이트에 출력한 원서) 나. 학력증명서 1부(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2) 4년제 대학 출신자 :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1부 3) 학점은행제 등 : 학점인정증명서(학사학위과정자) 또는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다. 전적(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총 취득학점 및 총취득학점의 백분율 점수가 기재된 것) 1부 라. 산업체 재직(경력사항 기재)증명서 1부 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1부 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산업체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필자 	가. 군 의무복무 경력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 미 가입 영세 창업·자영자 	가.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 산업체 	가. 농지원부, 영농사실 확인서(읍, 면, 동장 직인날인)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적 증명서 1부	

1.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

전형 유형	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연계과정 편입학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편입학		
	전적대학 성적	공인영어 성적	전공면접 성적	총점	전적대학 성적	총점	전적대학 성적	전공면접 성적	총점
전 모집단위	20점	40점	40점	100점	100점	100점	70점	30점	100점
	20%	40%	40%	100%	100%	100%	70%	30%	100%

2. 전적대학 성적 반영 방법

- 가. 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 총 취득학점 평균평점의 백분율점수 × 0.2
- 나. 연계과정편입학 : 총 취득학점 평균평점의 백분율점수를 그대로 반영
- 다.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편입학 : 총 취득학점 평균평점의 백분율점수 × 0.7

3. 공인영어성적 반영 방법

- 가. (본인의 공인영어시험 취득점수 ÷ 공인영어시험 만점) × 0.4
- 나. **배점의 40% 이하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함**

4. 전공면접고사 성적 반영 방법

- 가. 모집단위별 평가위원이 평가한 성적을 산술평균하여 반영
- 나. 평가내용
 - 1) 전공에 대한 지식의 양과 정확도, 논리적 사고력, 인성 및 태도 등을 평가
 - 2) 지원분야 전공수행에 필요한 전공기초 지식을 평가
- 다. 평가방법 : 구술에 의한 심층면접 실시

5. 성적 산출 시 소수점 처리 방법

- 가. 전형요소별 성적 산출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출함

6. 선발방법

- 가. 모집단위별 전형요소 성적을 일괄 합산하여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 1) 전공면접고사 결시자(일반편입학·학사편입학·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편입학 지원자)
 - 2)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 미제출자
 - 3)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다. 동점자 발생 시 선발 기준

1)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 가) 1순위 : 전공면접고사 성적이 높은 자
- 나) 2순위 : 공인영어성적이 높은 자
- 다) 3순위 : 전적대학 백분율 점수가 높은 자
- 라) 4순위 : 전적대학 총취득학점이 많은 자

2 연계교육과정편입학

- 가) 1순위 : 전적대학 백분율 점수가 높은 자
- 나) 2순위 : 전적대학 총취득학점이 많은 자
- 다) 3순위 : 주민등록상 연장자

3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편입학

- 가) 1순위 : 전공면접고사 성적이 높은 자
- 나) 2순위 : 전적대학 백분율 점수가 높은 자
- 다) 3순위 : 전적대학 총취득학점이 많은 자